

<참고자료>

장애인권리협약 관련 UN 제6차
특별위원회 현황

2005. 7.

보건복지부

UN 장애인 권리협약 특별위원회 개요

1. 그간의 경과

- 멕시코의 파스 대통령이 2001년 56차 총회 기초연설을 통해 장애인 권리협약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제안
 - 타협안으로 “장애인 권리협약에 대한 제안들(proposals)을 고려하기 위한 Ad Hoc 위원회 설치”에 합의(UN총회 결의안, '01. 12. 19, 56/168)

- 이에 따라 '02년 8월 1차회의부터 '05년 1월 5차회의까지 총 5회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약의 형태, 성격 및 구조 및 비차별, 평등원칙 등을 토의중임

< 제1차 특별위원회(2002년 8월) >

- 회의 의제 설정(agenda setting) 및 회의 구성(organization of work)에 대한 합의부재로 인해 절차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로 대부분의 시간을 소진

< 제2차 특별위원회(2003년 6월) >

- 협약의 형태, 성격 및 구조 및 비차별, 평등원칙 등을 토의하고 Ad Hoc 위원회에서 협약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Working Group을 구성을 결의

< 실무그룹 회의(2004년 1월) >

- 27명의 정부대표 및 12명의 NGO 대표 및 1명의 국가인권기구 대표로 구성된 실무그룹 회의에서 협약초안 마련

< 제 3차 특별위원회(2004년 5월) >

- 2004년 1월 실무그룹에서 채택한 초안 자료에 대한 정부대표 차원의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함

< 제 4차 특별위원회(2004년 8월) >

- 제목, 구성, 전문, 정의(제3조), 모니터링(제25조)을 검토하여 실무단의 보고서(A/AC.265/2004/WG.1) 내용을 장애인권리협약 초안으로 결정함.
- 제1조 ~ 제15조와 제24-2조를 조항별로 검토하고 추후 회의를 개최하여 초안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

< 제 5차 특별위원회(2005년 1월) >

- 본 제5차 회의에서는 협약초안 가운데 제7조~제15조의 각 조항별 토의가 이루어졌음.
- 여성장애인 등 새로운 조항을 포함시키자는 장애인 NGO들의 의견개진이 있었으며, 제15조 다음에 제15-2조(여성장애인, Women with Disabilities) 조항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후기 제6차 회의로 이월됨.

2. 제6차 특별위원회 개요

□ 일시 및 장소: 2005. 8. 1(월) ~ 8. 12(금) 2주간, UN 본부

□ 회의 목적

- 2004년 8월 UN 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채택된 협약초안의 제16조부터 제24-2조를 토대로 회원 국가간 각 조항별 문구 개정 및 수정 논의

※ 특히 회의 초반 우리정부가 지난 3차회의시 제안한 여성장애인 단독조항의 신설여부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

□ 정부대표단(예상)

소속	직위	성명	비고
외교통상부	국제기구정책관	강경화	수석대표
	유엔대표부 참사관	최홍기	정부대표
	유엔대표부 서기관	김일범	"
	인권사회과 외무관	조수진	"
	국제협약과 외무관	이석주	
보건복지부	장애인정책과장	왕진호	"
민 간	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	이익섭	"
	한국보건사회연구원	변용찬	"

* 장애인 관련 NGO 참가 :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 등 15명 참석 예상

3. 6차회의시 논의 조문

□ 여성장애인 단독조항 신설(15bis)

○ 5차 특별위원회 활동

- 공식 논의는 없었으나 우리나라 NGO단체는 UN 대표부 후원하에 리셉션을 개최(1.27)하였고, United Women with Disabilities 주관하에 “협약상 여성장애인” 패널을 개최(2.3)하는 등 공감대를 확산함
- 금년 8월 예정된 제6차 회의에서 여성장애인 조항을 제15-2조로 추가 여부에 대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

○ 6차 특별위원회 전망

- 여성장애인 조항을 제15-2조로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
- 금번회의시 수정제안은 단독조항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전략상 차질이 우려되어 우선은 기존 우리정부가 제안한 조문을 중심으로 필요성을 강조하되, 논의과정에서 수정·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장애계 의견등을 반영하여 대처 예정

※ 금번 6회의시 외교통상부 강경화국장이 facilitator역할 수행

□ 기타 조문

- 제6차 회의는 15 bis, 24 bis, 16조~24조 등의 순으로 진행예상

< 참고 1 > 장애인권리협약 워킹그룹 초안 구성

- 전문(Preamble)
- 명칭(Title)
- 제1조 목적
- 제2조 일반원칙
- 제3조 정의
- 제4조 국가의 일반의무
- 제5조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 촉진
- 제6조 통계 및 자료 수집
- 제7조 평등과 비차별
- 제8조 생명권
- 제9조 법 앞의 평등
- 제10조 자유와 신체 안전
- 제11조 고문 등으로부터의 자유
- 제12조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
- 제13조 표현 · 의견의 자유 및 정보접근
- 제14조 사생활 · 가정 및 가족의 보호
- 제15조 자립생활 및 공동체 참여
- 제15-2 여성장애인(Women with Disabilities)
- 제16조 장애 아동(Children with Disabilities)
- 제17조 교육권(Education)
- 제18조 정치 및 공공활동 참여
- 제19조 접근성(Accessibility)
- 제20조 개인이동(Personal Mobility)
- 제21조 건강 및 재활의 권리
- 제22조 근로의 권리(Right to Work)
- 제23조 적정생활수준 및 사회보장
- 제24조 문화 · 생활여가, 레저 및 스포츠
- 제24-2 국제협력
- 제25조 모니터링(Monitoring)

<참고 2>

□ 국제권리조약 (International Rights Convention)

- UN총회에서 UN가입국의 가부결과에 따라 다수로 가결된다. 가결되면 정식으로 국제권리조약으로 발효가 되며, 각 국가별 비준을 받아 비준한 국가에 적용되게 됨
- 우리나라에서의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며, 국가별 상황에 따라 부분비준을 할 수 도 있음

□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권리조약(6대 권리조약)

-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(국내적용일 1990.7.10)
- 경제적,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(국내적용일 1990.7.10)
-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국제조약(국내적용일 1985.1.26)
-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국제조약(국내적용일 1995.2.8)
-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(국내적용일 1991.12.20)
-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조약(국내적용일 1979.1.4)